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45호 2023. 11. 15.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3-82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3-87호 사방지 지정 고시.....5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3 -1279호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7
- 정선군 공고 제2023-1311호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
- 정선군 공고 제2023-1314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24
- 정선군 공고 제2023-131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33

- 정선군 공고 제2023-1322호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9
- 정선군 공고 제2023-1324호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45
- 정선군 공고 제2023-1341호 정선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51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28호 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70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29호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8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3-82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8호(2023. 8. 24.)로 최초 결정된 정선 군관리계획(전기공급 설비:송전선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정 선 군 수

- 1.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 나. 명 칭 : 강원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동강지중화), 수직구 #2, #3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전기공급 설비	송전선로	□ L=26.615km, A=811,481㎡			□ 5구간 동강지중화 구간 중 수직구 #2, #3 / A=8,051㎡ - 수직구 A=5,169㎡ - 진입로 A=2,677㎡ - 터널부지 A=205㎡
		구 분	시설연장(km)	구역면적(㎡)	
		계	26.615	811,481	
		4구간	3.501	111,952	
		5구간	18.1	514,838	
		6구간	5.014	184,691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복
 - 나.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6.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수직구 구간)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정선읍 굴암리	472-6	전	258	97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81 현대@ 94-1206	김○수			
2	정선읍 굴암리	472-2	전	2,541	1,88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73-1	김○옥			
3	정선읍 굴암리	산226	임	9,917	366	국	환경부			
4	정선읍 굴암리	470-1	대	509	50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470-1	이○우			
5	정선읍 굴암리	470-3	전	1,583	1,54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259	이○우			
6	정선읍 굴암리	470-2	전	202	20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259	이○우			
7	정선읍 굴암리	471	전	2,816	370	국	환경부			
8	정선읍 굴암리	467-1	구	637	198	국	국토 교통부			
계				18,463	5,169					

● 토지조서(진입로 구간)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정선읍 굴암리	472-6	전	258	82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81 현대@94-1206	김○수			
2	정선읍 굴암리	470-3	전	1,583	1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259	이○우			
3	정선읍 굴암리	469-1	도	230	21	국	국토 교통부			
4	정선읍 굴암리	469-2	잡	200	1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주식회 사캐○ 티			
5	정선읍 굴암리	472-2	전	2,541	3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73-1	김○옥			
6	정선읍 굴암리	472-8	전	1,108	569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81 현대@ 94-1206	김○수			
7	정선읍	472-3	도	403	93	공	정선군			

	굴암리								
8	정선읍 굴암리	469	전	1,377	753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259	이○우		
9	정선읍 굴암리	469-3	도	1,081	601	공	정선군		
10	정선읍 굴암리	467-1	구	637	15	국	국토 교통부		
11	정선읍 굴암리	467-3	도	140	71	국	국토 교통부		
계				9,558	2,677				

◎ 토지조서(터널구간)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 내용
1	정선읍 굴암리	472-6	전	258	1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81 현대@94-1206	김○수			
2	정선읍 굴암리	산226	임	9,917	48	국	환경부			
3	정선읍 굴암리	472-2	전	2,541	8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73-1	김○옥			
4	정선읍 굴암리	469	전	1,377	4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259	이○우			
5	정선읍 굴암리	469-1	전	230	11	국	국토 교통부			
6	정선읍 굴암리	467-3	도	140	13	국	국토 교통부			
계				14,463	205					

정선군 고시 제2023-87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23년 사방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사업지를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정 선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사방종류	비고
군	읍,면	리	지번					
정선	화암	북동	산481	임	44,926	79	유역관리	
			388	임	2,093	50		
			388-1	도	120	107		
			390-1	도	96	5		
			619	구	532,721	2,533		
			산475	임	136,959	125		
			산478	임	26,777	20		
			464	전	1,144	29		
			465-1	도	1,678	31		
			산544	임	406,909	180		
			561	임	154,513	706		
			562-2	전	5,722	38		
			560	전	407	8		
			560-1	도	1,481	30		
	임계	고양	221-1	구	391,265	237	사방댐	
			105-1	도	792	8		
			106	임	15,993	13		
계			17필지		1,723,596	4,199		

※ 필지별 내역은 사방지 지정명세서와 같음

2. 지정사유 : 2023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지정대상 : 사방댐, 유역관리 사업 시행지

4. 지정년월일 : 2023. 11. 14.

5.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는 정선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6.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 산림과(033-560-24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3 -1279호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공공요금 인상 및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적자운영 심화에 따라 복지목욕탕 사용료 인상 필요
- 나. 관외 이용자 증가에 따라 군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 관외 사용자에게 대한 차등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복지목욕탕 사용료 기준액 변경과 관외자 사용료 신설(안 제18조)

- 목욕탕 시설 사용료 인상: 별표2
- 시설사용료 기준액의 상·하한액 범위 변경(20%→40%)

구 분		대 인	소인, 취약계층	1월 이용	비고
변경 전		3,500원	2,500원	50,000원	
변경 후	군민	4,000원	2,500원	70,000원	
	관외	6,000원	4,000원	100,000원	신설

3. 의견제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1(화)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 연락처 : 전화(033-560-2170), 팩스(033-560-2588)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복지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간사) 중 “총무담당주사가” 를 “총무팀장이” 로 한다

제15조(회계 및 운영) 중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을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8조(사용료의 결정) 중 “각 20퍼센트 범위안에서” 를 “각 40퍼센트 범위안에서” 로 한다

제26조(준용) 중 “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을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면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번호	시 설 명	위 치	비 고
1	고한읍종합복지회관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	
2	사북읍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사북읍 사북2길 16	
3	신동읍조동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30	
4	신동읍예미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1	목욕탕 (2003년)
5	화암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	
6	남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	
7	여량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	
8	아우라지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24	목욕탕 (2004년)
9	북평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5	
10	임계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4	
11	임계 목욕탕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4	2009년
12	북평 목욕탕	정선군 북평면 북평중앙로길 45	2015년
13	화암 목욕탕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6-16	2017년
14	남면 목욕탕	정선군 남면 별어곡1길 26	2023년

【별표 2】

시설 사용료 기준(제18조 관련)

○ 읍면 복지회관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기준액)	비 고
1. 예식장	1회	50,000	2시간
2. 다목적집회장	1회	35,000	4시간

○ 목욕탕

(단위: 원)

구 분	기 준		이용료	비고
군 민	1회 이용권	대인	4,000	
		소인	2,500	
		취약계층	2,500	
	월 이용권	20회	70,000	
관 외	1회 이용권	대인	6,000	
		소인	4,000	
		취약계층	4,000	
	월 이용권	20회	100,000	

○ 소인 : 미취학 아동

○ 대인 : 6세이상 ~ 64세이하

○ 취약계층: 경로자, 장애인(심한장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간사) ① (생략) ②간사는 읍·면 <u>총무담당주사가 된다.</u></p>	<p>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총무팀장이 된다.</p>
<p>제15조(회계 및 운영) ①회관의 수입 과 지출은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에 의하여 회계관리를 한다. ② · ③ (생 략)</p>	<p>제15조(회계 및 운영) ①----- -----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의하여 회계관리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사용료의 결정) ①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기준 액의 상·하한 각 <u>20퍼센트 범위</u> 안에서 위원회가 지역실정, 물가, 시설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② · ③ (생 략)</p>	<p>제18조(사용료의 결정) ① ----- ----- -----40퍼센트 범위 -----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 재정법」, 「정선군 공유재산 관 리 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 칙」을 따른다.</p>	<p>제26조(준용) ----- ----- ----- -----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p>

【별표 1】

읍면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변경 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비 고
1	고한읍종합복지회관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	
2	사북읍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사북읍 사북2길 16	
3	신동읍조동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30	
4	신동읍예미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1	
5	화암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	
6	남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	
7	여량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	
8	아우라지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24	
9	북평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5	
10	임계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4	

〈변경 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비 고
1	고한읍종합복지회관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	
2	사북읍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사북읍 사북2길 16	
3	신동읍조동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30	
4	신동읍예미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1	목욕탕 (2003년)
5	화암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	
6	남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	
7	여량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	
8	아우라지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24	목욕탕 (2004년)
9	북평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5	
10	임계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4	
11	임계 목욕탕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4	2009년
12	북평 목욕탕	정선군 북평면 북평중앙로길 45	2015년
13	화암 목욕탕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6-16	2017년
14	남면 목욕탕	정선군 남면 별어곡1길 26	2023년

【별표 2】

(단위: 원)

시 설 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기준	사용료	구분		사용료	
1. 목욕탕	1회	3,000	1회	대인	4,000	군민
				소인	2,500	
				취약계층	2,500	
			월 이용권	20회	70,000	
2. 회의실 가. 예식장 나. 다목적 집회장 기타	1회 1회	50,000 35,000	1회	대인	6,000	관외
				소인	4,000	
				취약계층	4,000	
			월 이용권	20회	100,000	
			변경 없음			

- 소인 : 미취학 아동
- 대인 : 6세이상 ~ 64세이하
- 취약계층 : 경로자, 장애인(심한장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정선군 공고 제2023-1311호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을 인사혁신처의 지급 기준과 통일하여, 전문성 있는 시험위원을 초빙 및 위촉으로 객관성 있는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소관 부처 변경(안 제2조)

- (기존) 행정자치부장관
- (변경) 인사혁신처장

나. 시험수당 지급대상 구체화(안 제2조)

-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다. 자치법규 적합성을 위해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수당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4조)

- (기존) 5급 공무원 상당
- (변경) 4급 공무원 상당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선군”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종사한 시험위원 등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에”를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관하여”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목 외의 부분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해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을 “정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으로, “지급”을 “수당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제외) 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5급”을 “4급”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2조에 따른 시험수당 및 제5조에 따른 여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총무행정담당관 전 증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정선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 등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u>----- <u>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관하여</u> ----- <u>규정함</u>----- --.</p>
<p>제2조(지급기준) <u>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u> <u>해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지급기준) <u>정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u>----- ----- ----- <u>수당을 지급</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u> 2. <u>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u> 3. <u>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u>
<p>제3조(지급대상) <u>수당 지급대상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관리관 및 편집요원과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u></p>	<p><u><삭 제></u></p>

제4조(지급제외) 군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다.

제5조(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지급제외) 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여비) -- 소속 공무원-----

- 4급 -----
-----.

<삭 제>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 ④ 생략

⑤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 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3-1314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소관부처 및 강원특별자치도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우리 군도 관련 내용 정비와 소관부서를 지정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022. 7. 5. 시행)

※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2. 주요내용

가. [별표1] 업무분장표 기획관 소관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및 환경과 소관 “지방의제 21 그린스타트 관리” 업무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로 분장사무명 변경

부 서 명	분장사무	비 고
기획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시설국 환경과	지방의제 21 그린스타트 관리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변경

나. 관계법령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9일(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의견

4. 첨부서류

- 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나.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라. 관계법령 1부.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를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를 “직속기관” 으로 한다.

제7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9조제4항 본문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로 한다.

제10조 중 “「지역보건법」 제11조” 를 “「지역보건법」 제11조” 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 를 “「지방자치법」 제131조” 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본청 업무분장표(제6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기획관	1~68	(생략)
	69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생략)		(생략)
환경과	1~22	(생략)
	23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24~80	(생략)
(생략)		(생략)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기존 사무분장의 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총무행정담당관 전 증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u>직속기관의 장</u>,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읍·면을 말한다)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직속기관 제1절</u> <u>농업기술센터</u> <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직속기관</u> <u>제1절 농업기술센터</u></p>
<p>제9조(직급) ① ~ ③ (생략)</p> <p>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 임명한다.</p> <p>⑤ (생략)</p>	<p>제9조(직급)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분장사무) 보건소장은</p>	<p>제10조(분장사무) -----</p>

<p><u>「지역보건법」 제11조의</u> 사무 를 분장한다.</p> <p>제15조(직급) <u>「지방자치법」 제131조</u>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면장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p> <p>1. ~ 4. (생략)</p>	<p><u>「지역보건법」 제11조</u>----- -----.</p> <p>제15조(직급) <u>「지방자치법」 제131조</u>----- -----.</p> <p>1. ~ 4. (현행과 같음)</p>
---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생략)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3-131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정선군립도서관 직영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보건소 내 정원 복수 조정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선군립도서관 직영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정원 반영(별표)

- 본청(가족행복과) 내 도서관운영담당 신설
- 반영직급 : 지방행정주사·지방사서주사

나. 직속기관(보건소) 내 복수정원 조정 반영(별표)

- 지방보건진료주사 3명
-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보건진료주사 3명

다. 정원 상계조정 내역

현 행	본 청 지방행정주사 1명	직속기관 지방보건진료주사 3명
조 정	본 청 지방행정주사·지방사서 주사 1명	직속기관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보 건진료주사 3명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9일(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4. 첨부서류

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나.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정원 증원 없이 정원 내 조정으로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총무행정담당관 전 증 표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3.(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정선군 공고 제2023-1322호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군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 군정 시책 추진 및 대민봉사 행정 구현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선군수 포상 종류 추가(안 제4조)

- 표창장, 감사장, 상장 →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 같은 조 단서 신설 :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모범공무원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나.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정선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5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4. 첨부서류

가.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 전 화 : 033 - 560 - 2231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kyu003549@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상장” 을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모범공무원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정선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 2.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상여금 지급

- 월 5만원 × 12(월) × 15(명) = 900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이 발생하나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총무행정담당관 전 증 표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3-1324호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군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 군정 시책 추진 및 대민봉사 행정 구현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발(안 제3조) : 모범공무원은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5명 이내로 선발한다.

나. 상여금 지급(안 제4조) :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5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4. 첨부서류

- 가.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부.
- 나.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 다. 관계법령 1부.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 전 화 : 033 - 560 - 2231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kyu003549@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선군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정선군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다만, 「정선군 포상 조례」 제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현격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 주관부서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5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할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정선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상여금 지급(안 제4조)
 - 월 5만원 × 12(월) × 15(명) = 900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이 발생하나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총무행정담당관 전 증 표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정선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정선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과 군수의 책무 등(안 제1조~제5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6조~제8조)
 -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비전으로 설정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1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9조~제17조)
 - 군수 등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안 제18조~제25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안 제 26조~제31조)
 - 협동조합 활성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등 지원 근거 규정
 - 탄소중립 지원센터, 기후대응기금의 설립·운영, 설치 근거 규정
-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함

3. 첨부파일

- 기본조례안 : [붙임1]-4page

○ 참고조례안 : [붙임2]-15page

○ 관련법발취 : [붙임3]-28page

4. 입법예고 : 2023. 11. 15. ~ 2023. 12. 5.(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환경과)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45), 팩스(033-560-2589)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문화예술회관 2층 환경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정선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정선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위탁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정선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탄소중립·녹색성장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8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민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 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립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6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29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군민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1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군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참고 조례안>

(○○시·군·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이 참고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2022. 3.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참고 조례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 참고조례안은 각 지역에서 조례 입안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 참고조례안의 내용을 조례에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군·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시·군·구의 책무) ① 시·군·구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

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군·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군·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군·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군·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군·구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군·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군·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¹⁾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군·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시·군·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1) 조례 입안시 2050년 또는 이전 연도를 탄소중립 목표연도로 설정 가능함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군·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 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시·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자체 결정)²⁾과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군·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자체 판단하에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급으로 지정하여 입안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사무국)³⁾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3)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려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때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9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군·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시·군·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

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군·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군·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7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28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군·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지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군·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시·군·구 저탄소 녹색성장 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관련법 발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

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탄소중립시·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을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시·군·구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군·구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28호

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정선군의회의회장

1. 제안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선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군민의 생명 및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통지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사항 등 규정(안 제8조~제13조)
- 화학물질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3. 예고기간 : 2023. 11. 07 ~ 11. 12.(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2일까지 정선군의회의회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177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sbonnie@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선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원방안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선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공한 배출저감계획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4.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5. 법 제23조의4에 따라 군에서 수립한 화학사고대응계획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통지) 군수는 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알릴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정선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정선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정선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학물질 관련 기업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배출저감, 지역대비 체계 운영, 관련 정보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노동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5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화학사고 대응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자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29호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정선군의회회의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소집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선군의회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선군의회 연간 회의(본회의 및 임시회) 일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조)
-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회기 운영 및 안전처리 규정 (안 제6조)
 - 임시회 때 회기 15일 이내 운영
 -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 안건 등을 심의 처리
 -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할 수 있음
- 정례회 회기 운영 등 자구 정비 (안 제1조, 제3조~제5조, 제7조)

3. 예고기간 : 2023. 11. 7. ~ 11. 12.(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2일까지 정선군의회
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팩 스: 033-563-0320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의회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84조에 따른 정선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회기운영” 을 “제56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회기와 운영” 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연간 회의 총일수)” 를 “(연간 총 회의일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선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 제목 “(회기운영)” 을 “(정례회의 회기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3조” 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 로, “2회로 나누어 개최하고” 를 “2회 개최하되”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안전심의)” 를 “(정례회의 안전처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라 결산안 승인 및 기타” 를 “따른 결산 심의 및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심의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6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전처리)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③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84조에 따른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56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회기와 운영 ---- ----- ----- ----- .</p>
<p>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p>	<p>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회기운영) ①의회는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고, 매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p>	<p>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2회 개최하되----- ----- .</p>
<p>②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p>	<p><삭 제></p>
<p>제4조(정례회 집회일) 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p>	<p>제4조(정례회 집회일) ----- -----</p>

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2. (생략)

제5조(안건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안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06.16.>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 . 그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제5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 따른 결산심의 및 그 밖에 -----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심의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삭제>

제6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③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
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
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
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
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
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
----- 필요
한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